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98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윤한홍 · 김위상 · 박상웅
주진우 · 박형수 · 김상훈
박덕흠 · 엄태영 · 최수진
김재섭 · 권성동 · 강명구
의원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안 제6조)
- 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 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 중 별표의 전투 또는 작전을 말한다.
2.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란 위험작전에 참여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을 말한다. 다만, 위험작전 참여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제5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위험작전 참여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위험작전참여수당

의 환수

3.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작전 참여 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수당 및 의료 지원 등

제6조(위험작전참여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험작전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험작전참여수당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위험작전참여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

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의 보호) ① 위험작전참여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위험작전참여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위험작전참여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0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3장 보칙

제18조(위험작전참여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 제8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위험작전참여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위험작전참여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19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위험작전참여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

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험작전 참여 군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8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제18조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21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작전

구분	번호	전투·작전명	기 간
서해수호	1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2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3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4	연평도 포격전	2010년 11월 23일
	5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국민구출	6	십자성작전	1975년 4월 6일부터 1975년 5월 13일까지
	7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 1월 18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